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19
----------	------

2023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이승미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승미 의원)

1. 제안이유

- 기존의 교실과 종이교과서로 한정적이던 교육환경에서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로 더 질 높은 수업과 교육활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 피해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이

버폭력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윤리준칙 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학교 교육활동에서 지능정보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구축 지원 (안 제16조)
- 나. 교육감이 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윤리원칙 제정·보급,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안 제17조)
- 다.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화 촉진 등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18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이승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19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감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증가에 따른 윤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윤리준칙 제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교육현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촉진된 원격수업과 함께 정보화 기기 도입 및 에듀테크 기술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먼저 교육부는 2026년까지 총 100만명의 정보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하였고, 2024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교육 정책을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¹⁾과 교육부 계획에 부합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사이버 교수학습, 클라우드 활성화, 서울형 교육 스마트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보안 강화, 빅데이터 교육 서비스 지원 및 개방 등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²⁾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능정보화 정책은 각급학교의 네트워크 노후화 및 열악한 관리 등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와 같은 지원체계와 지능정보에 대한 윤리

1) 최근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3~2025)」(관계부처 합동, 2022.11.)을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문화 등 5개 전략 목표에 19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음.

2) ‘제3차(2019~2023년) 정보화 기본계획’, 서울시교육청, 2020.2.

1. 인공지능·소프트웨어·정보보호 교육확대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2. 미래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 서울교육 견인

3. D.N.A.(Data-Network-AI) 기반 특화교육 선도 서울교육 서비스 제공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기술이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지능정보화 윤리원칙을 제정·보급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활용 증가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제4항은 교육감이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이 아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육청의 정보화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의한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이를 반영한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안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매년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며, 교육청의 정보화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매년 수립되는 교육부의 실행계획을 교육청의 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상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동 조례 제6조제4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매년 작성되는 교육부의 실행계획을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 조례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

사회 실행계획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검토(안 제10조제3항제3호)

○ 안 제10조제3항제3호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질 뿐, 위원회 구성에 있어 상임위원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³⁾, 안 제10조제3항제3호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지능정보기술 등의 활용 지원에 대한 검토(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이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 지능정보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또는 교구 및 교재의 보급, 전문인력 확보, 재정 지원, 교직원 연수 등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제1항⁴⁾에 따

3)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4.4.26. 선고 93추175.)과 법제처의 의견제시(22-0104, 2022.4.27.)

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운영

2.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

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라 교육감이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과 지원인력 및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 더욱이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제1항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은 지능정보화 중 일부인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바,

안 제16조는 원격수업을 포함한 사물인터넷, 메이커교육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인 지능정보기술 등을 포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윤리 의식 제고에 대한 검토(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교육감에게 지능정보사회윤리에 대한 윤리원칙을 제정·보급하도록 하고(안 제1항), 관련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2조제1항⁶⁾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원칙을 담은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5.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책임성·통제성·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지능정보사회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지능정보사회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초등)’와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 등을 개발·보급(2023년)함으로써 국가수준 인공지능 윤리기준(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윤리를 교육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7조는 상위법과 이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실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원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과와 연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에게 지능정보기술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7)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와 같은 제17조8)에 따른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따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안 제18조는 법적 체계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의 효율적 협력과 관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7)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8)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6)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검토(안 제12조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안 제14조)

○ 안 제12조 및 제14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소집통지, 의견청취, 심의·조정사항을 서면 대체, 회의결과보고, 위원회 운영사항 결정권한, 위원회 참석자의 수당지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79.,2023.10.27.)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 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4항).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19
----------	------------

제안연월일 : 2023년 12월 1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교육청의 정보화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기본계획 대신 매년 수립되는 교육부의 실행계획만을 교육청의 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상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교육부의 실행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제4항에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의 고려대상에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추가함(안 제6조제4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을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 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
사회 실행계획”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③ (생략)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중합계획 및 <u>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u>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중합계획 및 <u>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u>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중합계획 및 <u>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 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u> 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학부모,” 를 “보호자 및”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 을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 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를 “그 밖” 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로 하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지능정보기술 등의 활용 지원)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 지능정보기술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용 정보통신기기(「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용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 또는 교구 및 교재의 보급, 전문인력 확보, 재정 지원, 교직원 연수 등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윤리 의식 제고)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있어 지능정보사회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윤리원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 촉진 및 교육활동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학생, <u>학부모</u>,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구성원(이하 “교육관계자”라 한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시행</p> <p>2. 3. (생략)</p> <p>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③ (생략)</p> <p>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u>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u>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 ----- ----- -----.</p> <p>1. --- <u>보호자</u> 및 ----- ----- -----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6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u>, 같은법 제7조에 따른 <u>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u>----- -----.</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1. 2. (생략)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④·⑤ (생략)

제12조(회의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⑤ 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학생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1. 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④ 그 밖-----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
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
· 조정에 참여한 위원 또는 전문
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
속 공무원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
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5조 · 제16조 (생 략)

<신 설>

-----.

<삭 제>

제16조(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지능
정보기술 등의 활용 지원) 교육감
과 각급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
동에 있어 지능정보기술 등이 적극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
업, 교육 프로그램, 교육용 정보통
신기기(「디지털 기반의 원격교
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용 정보통신기
기를 말한다) 또는 교구 및 교재
의 보급, 전문인력 확보, 재정 지
원, 교직원 연수 등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 제15조 (현행 제15조 및 제
16조와 같음)

제17조(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

<신 설>

제17조 (생 략)

윤리 의식 제고) ① 교육감은 소
속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있어 지
능정보사회윤리가 확립될 수 있
도록 자체적인 윤리원칙을 제정
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관계자의 지능
정보사회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재와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각
급기관의 장은 정보화 촉진 및 교
육활동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정보화 추진 관련 공공
기관 및 연구기관, 단체 등과 협
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